

청소년봉사단 지도교사 (학생봉사동아리, 청소년단체) 선택가산점 부여 지침

I. 목적과 배경

1. 목적

- 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균형적 성장 지원
- 나. 학생봉사활동 지도교사에 대한 객관적 가산점 지원으로 교사의 사기양양 및 실천의지 제고
- 다. 학생들의 균형적 성장을 도와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활동

2. 배경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선택가산점 부여기준(인천광역시교육청 2015. 7. 30) 개정에 부응

- 3. 위 부여 지침은 2016.3.1.부터 시행한다.

II. 부여 기준

- 1. 선택가산점은 년 단위로 0.06점을 부여하며 총 0.5점을 초과하지 못함
- 2. 연간 활동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 단위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

III. 세 부 사 항

학생봉사동아리 지도교사 선택가산점

1. 대상 학생봉사동아리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 학생봉사동아리단체(이하 '동아리'라고 함)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가. 자격 요건

- 1) 학생봉사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로서
- 2) 지도교사를 학교장 승인 하에 내부결재하여 업무분장으로 배치하고
- 3) 교육청에 학생봉사 동아리로 보고한 동아리 (당해년도 4월30일까지)

나. 가산점 인정 조건

- 1) 상기 '가'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동아리
- 2)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익년도부터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해당 동아리가 학생봉사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되는 경우
 - 학생봉사 동아리 지도교사 소양교육, 활동실적 등의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지도교사 인정 요건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 지도교사는 다음의 가~다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당해학년도**에 교육청에 보고한 학생봉사동아리

나. **당해학년도**에 학생봉사동아리 지도교사 활동을 50시간 이상 실시한 교사

다. 자원봉사 소양교육을 이수한 교사(시간 수 제한 없음)

- 1) 지도교사가 학생봉사 지도 교사로 활동할 경우, 봉사소양교육을 이수해야 함.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되고, 이수시간은 1시간 이상)(2015.3.1. 이후 시간만 인정)
- 2) 자원봉사 소양교육은 지도교사의 연간 활동실적(50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3) 원격연수 인정.

3. 인정 시간 수

- 가. 실제로 활동한 시간만큼 인정하되, 수업이 있는 주중에는 1일 최대 2시간, 공휴일, 휴일, 방학 중에는 8시간, 단) 월 최대 인정시간은 영역구분 없이 8시간
- 지도교사가 1명인 경우는 참여학생 수가 2명이상, 지도교사가 2명인 경우는 4명이상 학생이 참여했을 때 시간인정 (단, 6학급이하 학교, 서해5도, 또는 전교생이 80명 이하 일 때는 1명이상)
- 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창의적체험활동 봉사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 영역 안내

1) 교내봉사활동

- 교내 봉사활동에는 교통 봉사, 학습부진 친구, 장애인, 병약자, 다문화가정 학생 돋기 등

2) 지역사회봉사활동

-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등에서의 일손 돋기, 불우이웃돕기,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꽃동네), 재해 구호 등

3) 자연환경 보호활동

-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 보호, 식목활동, 저탄소 생활 습관화, 공공시설물, 문화재 보호 등

4) 캠페인 활동실적

- 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주변 정화, 환경 보전, 현혈, 각종 편견극복 등

라. 시간 인정

시간 인정은 영역 구분 없이 총 50시간 이상 확보하여야 함.

마. 가산점 평정 기간

1) 가산점 부여 평정기간은 매 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종료 일로 한다.

바. 활동 시 유의사항

- 1) 학생봉사동아리 연간 활동 계획과 단위 행사 계획(서식5)을 추진하기 전에 결재(서식5에 봉사담당교사 또는 교감)를 받아야 함
- 2) 해당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 결과(서식2, 5)를 보고하고 이를 확인함
- 3) 교사가 학생을 직접 인솔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한 실적만 지도시간으로 인정함
- 4) 교내에서 정규 근무시간 중에 지도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 시, 필히 출장명령을 하되, 초과근무 신청과 확인은 하지 않음
- 5) 가산점 부여를 위한 지도 활동은 다음 연도 1월에 가급적 종료함을 권장함
- 6) 외부기관 봉사활동의 경우 활동 확인서가 필요함.
(서식 5 중 개인, 소집단 선택하여 사용)

4.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 수

가. 선택가산점부여 대상 지도교사 수는 학교의 단체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함

학생봉사동아리 학생 수	가산점부여 지도교사 수	비 고
15명 ~ 20명	1명	* 단, 6학급이하 학교, 서해5도 또는 전교생이 80명 이하 일 때는 7명~ 20명 * 학생 수 기준은 당해학년도 4월 30일
21명 이상	2명	

나. 교당 학생 수가 적은 도서지역 및 소규모 학교에서 다른 학교, 또는 학교급을 달리하는 학교와 연합 조직하여 가입 학생 수를 늘리는 경우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음

다. 학생 전입 등의 사유로 동아리 학생 수가 중도에 증가하여 지도교사 수가 늘어날 경우 해당동아리는 교육청에 지도교사 추가 보고를 해야 함. 이 때 동아리 학생 수의 증가로 추가등록한 지도교사가 연간 활동실적 인정기준(연간 50시간 이상 등)을 충족하면 선택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음

라. 학생 전출 등의 사유로 동아리 학생 수가 중도에 감소하여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 인정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아래 조건을 갖추면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 1) 가산점부여 지도교사가 교육청에 보고한 상태
- 2) 등록 당시 위의 4 - 가항에 부합
- 3) 연간 활동 실적 인정기준(연간 50시간 이상 등) 충족

마. 학생봉사동아리는 1개의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하게 둘 이상의 학생봉사 동아리에 중복 가입한 학생은 1개의 동아리만 선택하여 교육청에 보고하고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에서는 학생인원 수에서는 제외함 (중복 가입한 경우 조직 명부의 비고란에 중복 사항 기재)

바. 학생봉사동아리와 청소년단체에 중복 가입한 경우 한 동아리 · 단체만 선택하여 교육청에 보고하고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 · 단체에서는 학생인원 수에서는 제외함(중복 가입한 경우 조직 명부의 비고란에 중복 사항 기재)

서식 1

학생봉사 동아리 조직 명부

◎ 동아리명 : 000

2017년 1월 일 현재

번호	아동현황				지도교사현황			비고
	학생명	학년반	성별	생년월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이	하	빈	칸		

2017. 1. .

인천00 학교장(직인)

서식 2

2016학년도 학생봉사 동아리 지도 대장

동아리명	지 도 교 사		
	학 교 명	교사명	연락처(휴대폰)

월일 (요일)	활동내용	장소	영역별 활동 내용 및 시간 (주중 1일 2시간, 공휴일·휴일·방학 중에는 8시간 월 최대 인정시간은 영역구분 없이 8시간까지만 인정)					월계	참여 학생수	참여 교사수	지도교사 서명	교감 서명
			교내봉사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연환경 봉사활동	캠페인 활동	기타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월일 (요일)	활동내용	장소	영역별 활동 내용 및 시간 (주중 1일 2시간, 공휴일·휴일·방학 중에는 8시간 월 최대 인정시간은 영역구분 없이 8시간까지만 인정)					월계	참여 학생수	참여 교사수	지도교사 서명	교감 서명
			교내봉사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연환경 봉사활동	캠페인 활동	기타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계												

위 활동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학교장 (직인)

- ※ 1. 학년도 초에 인쇄하여 매 활동시마다 자필로 활동내용을 적고 교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2. 학교장이 활동내용을 책임지기 때문에 반드시 **활동 증빙서류(활동확인서, 출장명령부)**를 첨부하여 교감 서명을 받음
- 3. '월계'란에는 매월 마지막활동 기재란에만 월 활동시간 계를 기입함
- 4. 청소년봉사단 운영 지침에 의거,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 수만 기입함
- 5. 활동한 횟수만큼 행을 추가하여 사용

서식 3**2016학년도 학생봉사동아리 지도교사 업무분장 확인서**

◎ 동아리명 :

연번	직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장내용	업무분장기간	비고

작성자 : 직 교감 성명 (인)

위와 같이 학생봉사동아리 분장사실을 확인합니다.

2017년 1 월 일

○○○○ 학교장 (직인)

서식 4**2016학년도 학생봉사동아리 선택가산점 인정 교원 [엑셀]**

○○학교(○○교육지원청)

연번	학 교 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유공기간		비고
					시작일	종료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예시	인천○○학교	교사	홍길동	751224	20160301	20170228	

※ 별도 공문과 함께 엑셀 서식으로 제공됨

서식 5

봉사활동 확인서(개인, 소집단 선택하여 사용)

개인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학생 인적사항	학교명		학년반 번호		성명	
인솔교사 인적사항	성명					
활동일시	2016년 월 일 부터 ~ 2016년 월 일 까지					
	시 ~ 시까지			일간 총 시간		
활동장소	기관명					활동영역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교내봉사활동
	장소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봉사활동
활동내용	<input type="checkbox"/> 자연 · 환경봉사활동 <input type="checkbox"/> 캠페인활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 월 일

성명 (인)

위의 봉사활동 계획을 허락합니다.

(학교장의 위임 전결을 받아)

담임(지도교사) (인)

위의 계획에 의거하여 총 ()시간 봉사 활동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확인 기관명 :

소집단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0 0 0 0 학교

소집단명	활동장소 (기관.TEL)			활동영역	<input type="checkbox"/> 교내봉사활동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봉사활동 <input type="checkbox"/> 자연·환경봉사활동 <input type="checkbox"/> 캠페인활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활동일시					년 월 일 ~ 월 일	활동시간
활동학생 ()명	학년반	번호	성명	학년반	번호	성명
인솔교사명						
활동목적						
활동내용						
준비물						
위와 같이 소집단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의 봉사활동 계획을 허락합니다.						
(학교장의 위임 전결을 받아)						
지도(담임)교사 :						
위와 같이 총()명이 ()시간씩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 기관명 _____						
확인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선택가산점

1. 대상 청소년단체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 청소년단체(이하 '단체'라고 함)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가. 자격 요건

- 1)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정의) 및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에 의거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청소년활동) 내지 제5호(청소년보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
- 2) 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 등록을 필하고, 자체법규집(정관, 현장, 규정)이 있는 단체
- 3) 매학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10개교 이상, 300명 이상의 학생이 단원으로 등록한 청소년단체
(※ 2010년 1월 1일 이후 적용)
- 4) 연간 15시간 이상의 지도교사 청소년단체 관련 직무연수(원격연수 제외)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

나. 가산점 인정 조건

- 1) 상기 '가'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
 - 지도교사 선택가산점 부여 인정 단체는 시교육청 주관과에서 5월에 고시함
(※ 2010년 1월 1일 적용)
- 2)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학년도부터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해당 단체의 본부나 인천연맹의 운영에 있어서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비교 육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연수, 활동실적 등의 증빙 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2. 지도교사 인정 요건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 지도교사는 다음의 가~다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당해학년도에 해당 단체 등록

나. 당해학년도에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활동을 90시간 이상 실시한 교사

다. 직무 연수(15시간 이상) 이수

- 1) 지도교사가 해당단체 지도 교사로 계속 활동할 경우, 해당단체의 연수는 1회 이수로 유효함
- 2) 지도 교사의 소속 단체가 바뀔 경우, 바뀐 소속 단체의 연수를 당해학년도에 이수해야 함
- 3)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연수 이외에 기존에 이수한 연수실적도 인정함 (단, 이수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4) 원격연수는 제외함
- 5) 연수 이수 시간은 지도교사의 연간 활동실적(90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3. 인정 시간 수

가. 활동시간은 실제 활동한 시간만큼 인정하되, 1일 활동은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하고 월 15시간까지 인정함

- 지도교사가 1명인 경우는 참여 학생 수가 3명이상, 지도교사가 2명 이상인 경우 5명 이상 이상의 학생이 참여했을 때 시간인정 (단, 6학급이하 학교, 서해5도 또는 전교생이 80명 이하 일 때는 2명이상)
- 단, 청소년단체 연맹행사(타 청소년단체 연맹도 포함)의 경우 지도교사 인정 시간에 학생 참여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학교 자체 활동

1)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은 연간 40시간까지 인정함

- 교내외 봉사활동에는 교통 봉사, 외부시설(기관)방문 봉사, 각종 캠페인 참가, 연합 봉사활동, 쓰레기 분리수거, 주변 하천 정화활동, 학교 인근 환경정화활동, 재배활동 등이 포함됨
- 교내 봉사활동은 월 3시간까지 인정함
- 교외봉사활동 실적은 출장명령, 시간외 근무 등의 근무상황기록과 방문기관의 활동실적 확인서로 확인함

2) 외부견학체험활동 실적은 연간 30시간까지 인정함

- 외부견학체험활동에는 문화·예술체험, 견학활동, 수련회(극기훈련, 스키강습, 물놀이 등) 등이 포함됨

- 수련원 등을 이용한 위탁교육 시간과 C·A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 수련원 위탁 교육 중에서도 위탁과 비위탁(예시: 예절교육, 야간생활지도, 아침운동 등)을 구분하여 직접 지도한 비위탁시간은 활동 실적으로 인정함

3) 단체 성격 활동은 연간 30시간까지 인정함

- 단체성격활동에는 야영, 기능활동, 집회활동, 발단식 등, 청소년단체활동의 성격을 띤 학교 주관 활동이 포함됨
- 4) 지도 교사 연수, 단체별 지도 교사 회의는 지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연맹 활동

- 1)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또는 광역시 단위(중앙포함) 행사에 연2회 이상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함. 단, 강화, 옹진, 영종, 용유 지역은 연1회 이상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함
- 2) 타연맹 행사 참여 시 학교 자체 활동으로 인정함

라. 가산점 평정 기간

- 1) 가산점 부여 평정기간은 매 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종료일로 한다.
단, ① 2016학년도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일(14개월)로 한다.
② 2016학년도는 새로 부임한 학교에서 단체 지도 업무를 분장 받은 경우, 전임교의 실적(1월 1일~2월말)을 인정함
③ 2016학년도에 새로 부임한 학교와 전임교에서 지도한 단체가 같지 않은 경우, 전임교의 실적(1월 1일~2월말)을 인정함
④ 2016년 1, 2월 전임교의 활동 실적은 전임교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새로 부임한 학교에 제출하여 활동실적 인정기준(연간 90시간)을 충족시켜야 함

마. 활동 시 유의사항

- 1) 청소년단체 연간 활동 계획과 단위 행사 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학교장 결재를 받아야 함
- 2) 해당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확인함
- 3) 교사가 학생을 직접 인솔하여 지도한 실적만 지도시간으로 인정함
- 4) 교내에서 정규 근무시간 중에 지도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 시, 필히 출장 명령의 절차를 밟아야 함(초과근무 신청 및 초과근무 확인은 하지 않음)
- 5) 가산점 부여를 위한 지도 활동은 다음 연도 1월로 종료함을 권장함

4.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 수

가. 선택가산점부여 대상 지도교사 수는 학교의 단체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함

단체별 가입학생수	가산점부여 지도교사 수	비 고
20명 ~ 30명 (단, 6학급이하 또는 전교생이 80명이하인 학교 10~30명)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6학급이하 학교, 서해5도 또는 전교생이 80명 이하 일 때는 10명~ 30명 * 학생 수 기준은 당해학년도 4월 30일 * 가입학생수가 좌측표 이상일 경우에는 학생 30명당 지도교사 수를 1명씩 추가로 인정함.
31명 ~ 60명	2명	
61명 이상	3명	

- 나. 교당 학생 수가 적은 도서지역 및 소규모 학교에서 다른 학교, 또는 학교급을 달리 하는 학교와 연합 조직하여 가입 학생 수를 늘리는 경우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음
- 다. 학생 전입 등의 사유로 가입단원 수가 중도에 증가하여 지도교사 수가 늘어날 경우 해당단체에 지도교사 추가 등록을 해야 함. 이 때 가입학생 수의 증가로 추가등록한 지도교사가 연간 활동실적 인정기준(연간 90시간 이상 등)을 충족하면 선택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음
- 라. 학생 전출 등의 사유로 가입단원 수가 중도에 감소하여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 인정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아래 조건을 갖추면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 1) 가산점부여 지도교사가 청소년단체에 등록
 - 2) 등록 당시 위의 4-가항에 부합
 - 3) 연간 활동 실적 인정기준(연간 90시간 이상 등) 충족
- 마. 둘 이상의 단체에 중복 가입한 학생은 설립년도가 가장 최근인 한 단체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함(중복 가입한 경우 조직 명부의 비고란에 중복 사항 기재)
- 바. 학생봉사동아리와 청소년단체에 중복 가입한 경우 한 동아리 · 단체만 선택하여 교육청에 보고하고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 · 단체에서는 학생인원 수에서는 제외함(중복 가입한 경우 조직 명부의 비고란에 중복 사항 기재)

서식 1

청소년단체 조직 명부

◎ 단체명 : 000

2017년 1월 일 현재

번호	단원현황				지도교사현황			비고
	학생명	학년반	성별	생년월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이	하	빈	칸		

2017. 1. .

인천00학교장(직인)

서식 2

2016학년도 청소년단체 지도 대장

청소년단체명	지도교사		
	학교명	교사명	연락처(휴대폰)

월일 (요일)	활동내용	장소	활동시간			월계	참여 학생수	인솔 교사수	지도교사 서명	교감 서명					
			학교자체활동		연맹 활동										
			봉사 활동	외부견학 체험활동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월일 (요일)	활동내용	장소	활동시간			월 계	참여 학생수	인솔 교사수	지도교사 서명	교감 서명					
			학교자체활동												
			봉사 활동	외부견학 체험활동	단체성 격활동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월일 (요일)	활동내용	장소	활동시간			월 계	참여 학생수	인솔 교사수	지도교사 서명	교감 서명					
			학교자체활동												
			봉사 활동	외부견학 체험활동	단체성 격활동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계															

위 활동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학교장 (직인)

- ※ 1. 학년도 초에 인쇄하여 매 활동시마다 자필로 활동내용을 적고 관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2. 학교장이 활동내용을 책임지기 때문에 반드시 활동 증빙서류(활동확인서, 출장명령부 등)를 첨부하여 교감 서명을 받음
- 3. '월계'란에는 매월 마지막활동 기재란에만 월 활동시간 계를 기입함
- 4. 청소년단체 운영 지침에 의거,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 수만 기입함
- 5. 활동한 횟수만큼 행을 추가하여 사용

서식 3

연차등록 확인서

1. 단체명 :

2. 지도교사 현황

번호	성명	성별	직위	생년월일
1				
2				
3				

상기 교사는 2016년도 ○○○○○○○○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함

2017년 1 월 일

○○학교장(직인)

서식 4**2016학년도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분장 확인서**

◎ 단체명 :

연번	직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장내용	업무분장기간	비고

작성자 : 직 교감 성명 (인)

위와 같이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분장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7년 1월 일

○○○○ 학교장 (직인)

서식 5**2016학년도 청소년단체활동 선택가산점 인정 교원 [엑셀]**

○○학교(○○교육지원청)

연번	학 교 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유공기간		비고
					시작일	종료일	
1							
2							
3							
4							
5							
6							
7							
8							
9							
10							
11							
예시	인천○○학교	교사	홍길동	751224	20160301	20170228	

※ 별도 공문과 함께 엑셀 서식으로 제공됨